

의정정보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즐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4

2017-4호



- **충청남도 주요 제·개정조례**
 - 충청남도 간설기계 공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2건
- **최근 타시·도 제·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건
-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5건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모색 등 2건
-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 서울특별시의회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자녀양육휴가 도입 등 4건
- **최근 제·개정 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등 3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Contents

충청남도 주요 제·개정 조례

- ▶ 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5)
- ▶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7)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
-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14)
- ▶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 (18)
- ▶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1)
- ▶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 (23)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26)
- ▶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28)
- ▶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2)
- ▶ 공주시 전통시장 내 야시장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 기준 규칙 (33)
- ▶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35)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모색 (37)
- ▶ 부여군 농업발전 및 농촌 활성화 방안 모색 (44)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 ▶ 서울특별시의의회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자녀양육휴가 도입 (50)
- ▶ 인천광역시의의회 저출산 문제 해결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51)
- ▶ 대전광역시의의회 도안친수구역 공동주택 개발방식에 대한 정책간담회 개최 (52)
- ▶ 경상북도의의회,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일 「의정자문단」 출범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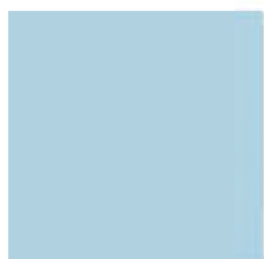
최근 제·개정 법령

- ▶ 위생용품 관리법 (56)
- ▶ 공동주택관리법 (58)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60)





충청남도 주요 제·개정 조례



1. 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4.20.] [충청남도조례 제4238호, 2017.4.20., 제정]

□ 주요목적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관리는 공영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도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하며,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7.4.20.] [충청남도조례 제4237호, 2017.4.20., 제정]

□ 주요목적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제2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변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추진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시행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표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3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 자문 및 감독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보수 관련 사업
5.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특례적용계획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사본

2. 우수건축자산의 주요가치 유지방안

3. 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미 적용한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제5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 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추진사업의 협의 및 조정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도지사가 협의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충청남도 소속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축자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소집하고 협의회 회무를 총괄 하며 협의체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 위원 중에서 선출된 위원이 임시위원장이 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자산 진흥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 도지사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을 신축(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한옥마을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② 융자지원의 대상사업은 「농어촌 정비법」 제55조제6호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하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 한도액) ① 제7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2. 융자금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다른 대상자에 우선하여 선정 지원 할 수 있으며, 한도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지침에 따른다. 단, 융자금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침에 따른 대상자이어야 한다.
- ② 제7조 중 한옥마을의 지원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비 범위에서 보조금을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는 융자금으로 지원하되, 제1항 각 호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도지사는 이미 지원된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다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한옥을 신축한 경우 : 10년

2. 그 밖의 경우 : 5년

제9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시기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를 착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액을 해당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해야 한다.

제10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유 건축문화를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건축문화에 관한 기록 자료의 구축사업

제11조(중복 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자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4.17.] [인천광역시조례 제5781호, 2017.4.17., 제정]

□ 주요목적

지역 언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언론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육성기반 조성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언론”이란 인천광역시를 송출권역 또는 보급지역으로 하는 방송,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는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하거나 신문을 발행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방송사업자 : 「방송법」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및 라디오 방송으로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고 한다)에 사업소재지를 두고, 인천시를 송출권역으로 하며, 사단법인 한국방송협회나,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에 가입한 방송사업자
2. 신문사업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신문으로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며, 사단법인 한국 ABC협회에 가입한 신문사업자로 인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거나, 정관 등에 따른 지역본사를 인천시에 둔 신문사업자
3. 인터넷신문사업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으로 사단법인 한국 ABC협회에 가입하고 인천시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

제5조(지원사업) 인천광역시장은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제4조에 의한 방송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화 지원사업
2.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3. 시민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 확대
4. 문화예술, 체육관련 행사대행 사업
5.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시청 · 구독 지원 사업
6. 시정 또는 의정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등 홍보 및 참가비 일부
7. 그 밖에 지역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4.1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004호, 2017.4.10., 제정]

□ 주요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 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재난)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구성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재난을 지원대상 재난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재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재난으로 한다.

1. 원인을 알 수 없는 사회재난
2. 책임 규명이 지연되는 사회재난
3. 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자력이 없는 사회재난
4. 그 밖에 위 호에 준하는 사회재난으로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재난

제5조(지원내용 등)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나.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다.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2. 그 밖에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시장은 사회재난의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을 정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시장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주관부서의 지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총괄 주관부서는 시민안전국 안전총괄과로 한다. 다만, 재난유형별 수습 주관부서는 소관 사회재난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난피해자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그 사회재난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관서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소방관서는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 전단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장기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④ 시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 통·리·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소방관서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으로 피해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사실확인을 통하여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간접지원 등)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재난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사실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8.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9.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10.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1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12.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3.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10조(지급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에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되, 담당공무원은 본인 수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반환통지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수령권자가 아닌 자가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을 받은 후 지급사유가 소멸하여 소멸된 경우 등 피해지원금품 반환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채권 관리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정예산,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3.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17.4.12.] [경기도조례 제5544호, 2017.4.12., 제정]

□ 주요목적

주민이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이란 주민의 참여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주민주도 현지개량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사람,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으로 형성된 집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은 주민간의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을 통해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한다.
3. 정비사업은 물리적인 생활환경개선, 교육·복지·문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4. 정비사업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정비사업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주민은 정비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정비사업 관련 주거복지사업과 연계 방안
 3. 정비사업 공모계획 및 주요 사업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계획 수립·공고) ①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매년 정비사업의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공모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신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제6조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대상) 정비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및 구역으로 한다.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 및 존치 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정비구역의 소유자 50%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중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등 수복형 주거재생이 필요한 사업지역 등
- 제9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장, 도로, 보안등, CCTV 설치 등의 생활환경개선사업
 2. 다목적회관, 경로당, 북카페,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
 3. 주민 교육, 돌봄, 안전, 일자리, 문화, 체육활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4. 주민공동체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5. 사업완료 이후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등 사후관리 사업

6. 맞춤형 정비사업과 연계된 주거복지사업 및 정부·기초자치단체의 지원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사업비의 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사업완료 보고) 정비사업의 계획수립 비용을 지원받은 시장·군수는 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향후계획,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도지사는 매년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기관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자료 요청)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군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주민협의체 구성) ① 도지사는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 계획수립과 실행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의견제시
 2. 정비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제시
- ③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4.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4.12.] [경기도조례 제5557호, 2017.4.12., 제정]

□ 주요목적

지역 간 평생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도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재능기부를 활성화하도록 멘토링(Mentoring)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멘토링”이란 멘토(Mentor)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 및 재능을 활용하여 결연을 맺은 멘티(Mentee)를 지도하고 조언함으로써 멘티의 역량과 잠재력 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2. “멘토”란 멘티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자를 말한다.
3. “멘티”란 멘토의 지도·조언을 받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선정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멘토링 사업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멘토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생인 멘토와 학습자인 멘티를 결연시켜 멘티의 학습 능력 및 예체능 능력을 발전시키는 사업
2. 공직자(도 산하공공기관 포함) 멘토와 대학생인 멘티를 결연시켜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상담과 조언을 하는 사업

3. 멘토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및 재능 기부자 발굴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험가입) ① 멘토와 멘티는 멘토링 사업에 따른 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손실·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멘토링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인증서 발급) 도지사는 멘토의 활동실적을 관리하며 활동실적에 따라 활동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 제7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멘토링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실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한다.
- ② 도지사는 멘토링 사업과 관련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5.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

[시행 2017.4.6.] [경상북도조례 제3895호, 2017.4.6., 제정]

□ 주요목적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수영실기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영실기교육”이란 수상 위기상황 시 자기구조법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기본구조법 등의 생존수영과 기본영법 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수영실기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영실기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수영실기교육 추진방법
3. 수영실기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 프로그램
4. 수영실기교육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수영실기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 사항
6. 그 밖에 수영실기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매년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수영장 실태 및 단위학교의 수영실기교육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수영실기교육 활성화)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수영실기교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업시수를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육대상자가 수영실기교육 참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수영장 시설 확보) ① 교육감은 수영실기교육을 위한 교육장소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내 수영장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도, 시·군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 및 전문강사 확보·연수) 교육감은 수영실기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 및 전문강사를 확보하고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조치 의무) 교육감은 수영실기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교사와 전문강사가 교육현장에 학생과 함께 하면서 직접 지도하도록 하고, 안전수칙과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 안전조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영실기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공공수영장 이용료 감경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위해 도, 시·군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17.4.20.]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272호, 2017.4.20., 제정]

□ 주요목적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언어권리 신장시키고자 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문화”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3. “수어통역”이란 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및 양천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5.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양천구가 설치한 공연장·관람장·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청각장애인 편의증진)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인터넷방송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수어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5조(수어활성화) ① 구청장은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양천구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양천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4.20.]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227호, 2017.4.20., 일부개정]

□ 주요목적

우리 지역의 안경산업 특구에 걸맞게 지역특화산업인 안경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한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경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안경제조업 및 관련업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EYE VIL의 시설물 및 장비를 사용하는 법인, 단체와 개인을 말한다.(개정 2015.11.10)
3. “사용료”란 사용자가 EYE VIL의 시설물 및 장비의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제14조에 따라 EYE VIL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1.10)

제4조(주요사업) EYE VIL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경 제품의 제조, 판매, 전시 등 집적화 구축
2. 안경산업 관련 신기술 개발, 디자인, 브랜드 등의 연구개발
3. 안경 제품 제조공장의 지원·육성
4. 그 밖에 안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관리·운영) ① EYE VIL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EYE VIL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EYE VIL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조정 ·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EYE VIL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신설 2015.11.10)

1. EYE VIL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2. 시설운영규정 등 제반 규정의 제정 · 개정 ·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본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장비의 구입과 처분 등에 관한 주요사항(신설 2017.4.20)
5. 기타 위원회의 조정 · 심의 · 자문에 관한 사항(개정 2017.4.20)

제7조(위원회의 구성) (신설 2015.11.10)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EYE VIL 업무 담당단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6.30)

1. 구 의원
2. 대구광역시 안경관련 사업 지원 담당 과장 또는 사무관
3. 안경산업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11.10)

제9조(위원장의 직무) (신설 2015.11.10)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신설 2015.11.10)

- ① 위원회는 구청장, 수탁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EYE VIL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EYE VIL의 시설물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EYE VIL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사용료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EYE VIL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제13조(공과금 등) EYE VIL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4조(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EYE VIL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 및 장비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시설물 및 장비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가 설립한 재단법인
2. 안정산업 지원 또는 연구 개발 실적이 있거나, EYE VIL의 관리·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EYE VIL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5.11.10)

제18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EYE VIL의 목적과 주요사업 수행에 위배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위탁을 취소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6조(청문)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취소할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위탁협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 시설물 및 장비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구청장은 지원한 경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사용허가) ① EYE VIL의 시설물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물 및 장비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목적이 EYE VIL의 사업목적에 위배될 때 2. EYE VIL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제2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물 및 장비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시설물 및 장비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 및 장비의 보수 또는 재난 등으로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일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EYE VIL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시달 및 지도·감독권을 가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탁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3.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4.24.] [강원도홍천군규칙 제1223호, 2017.4.24., 일부개정]

□ 주요목적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10조에 따른 희망택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 내용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읍·면장 추천에 의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4조(이용방법) ① 희망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마을대표자에게 신청하고, 마을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대표자가 결정한다.

② 마을대표자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운행횟수, 날짜와 시간, 운행장소 등을 정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사전에 이용신청을 한다.

③ 예약되지 않은 차량이거나 마을대표자와 협의 없이 개인이 임의적으로 탑승한 경우 탑승비용 지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5조(운행횟수) 희망택시 운행횟수는 월 8회(왕복)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이용실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가감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조(희망택시 운행자 선정) ① 희망택시 운행자 선정은 군수와 택시운행자 간에 사전 자율 협약하고 사전예약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운행한다.

② 군수는 희망택시 운행자에게 연 1회 이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수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③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택시운행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비용신청 및 지급)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비용 신청을 하는 경우 전산 출력된 요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탑승비용은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마을대표자는 택시운행자에게 지급한다.

4. 공주시 전통시장 내 야시장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 기준 규칙

[시행 2017.4.17.] [충청남도공주시규칙 제522호, 2017.4.17., 제정]

□ 주요목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의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사목에서 위임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정하여, 전통시장 야시장(夜市場) 활성화를 통한 관광명소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야시장(夜市場)”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시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2.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하 “이동판매업”라 한다)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별표 15의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을 야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공주시장이 허가한 이동판매형태의 업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이동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이동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세부 시설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건물의 위치 등

가. 즉석판매제조·가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분리 또는 구획 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 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구조와 자재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온도 유지로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연환기 등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이동판매대 구조와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이동판매대를 오염시키지 아니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장

가.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나.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에 기구·기계류 등을 설치하여 이동판매형태의 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각 시설과 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하고 제조·가공할 때 발생하는 악취, 매연, 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세척수 등을 보관하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 배수구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 해충, 설치류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도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제조·가공에 필요한 수도물 등의 사용량이 많은 식품은 오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판매시설

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 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나. 작업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이동판매대를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제품을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6. 화장실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4.20.]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956호, 2017.4.20., 제정]

□ 주요목적

각종 호우로 인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방지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침수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방지장치”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침수방지장치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창원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창원시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창원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장치에 대하여는 건물주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장치를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90퍼센트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3백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2천만 원 이하.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모색

< '17. 4. 13.(목) / 천안시 NGO센터 >

총 평



- 충남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방안과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의정토론회로
 - 참석자 대부분은 충청남도의회 차원에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재인식과 향후 폭 넓은 평생교육 참여기회 제공 마련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조사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프로그램의 정보 전달체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전문적인 인프라 구축, 제도적 기반 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코자 함.

주요 토론 내용

1 주제 발표

<우주형 교수 (나사렛대학교)>

- 2016년 기준으로 도내 발달장애인 수는 11,740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126,406명에서 9.3%에 해당
 - 자폐성장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보다 추가비용이 많고 고용률도 낮음.
 - 발달장애인 장애의 특성상 보편적인 발달단계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초기성인기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음.
 -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유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 시설 설립, 관련 법 제·개정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개선 방안 제시
- *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생교육의 보장은 그들의 인권보장의 문제로 보아야 하며, 중앙정부에 모든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부터 제대로 된 프로그램의 네트워크 구축해야 함

2 지정토론 (5인)

① 박종균 교수(나사렛대학교)

-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서 교육대상을 장애 유형을 구분하여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 학부모에게 상담적 측면보다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상담프로그램 필요
 - 발달장애인 직접적인 관련 전문 종사자들의 부족으로 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모임과 활동 요구
- 사회복지학과에서 장애인복지론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학습하지 않고 배출되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음.

-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하고 삶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과 거리가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립생활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가 추진되어야 함.

② 이원무 칼럼니스트(에이블뉴스)

-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욕구가 정말 중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달장애 정도와 특성 및 개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축
- 발달장애인이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알지 못하여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보체계의 체계적 확립과 평생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 의무화
- 평생교육 제공인력에서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을 갖추고, 장애감수성 제고 등 전문 평생교육 역량 함양 하도록 복지관 법인과 지자체, 국가에서 담당인력 지원
- 민간 설립 일반/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경우에는 발달장애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사 인력 양성·배치의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③ 광근수 과장(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법적 근거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은 미흡.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우리 도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2017.4.14.)
- 조례제정시 도내 발달장애인들의 생애주기별 특성 및 복지욕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관계 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조속한 시일내 마련코자 함.

④ 김기룡 사무총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조례 제정시 평생교육이라는 특정한 명칭을 포함시켜 조례명을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적절한지의 검토 필요
- 조례의 범위를 전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할 것인지,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만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
- 관련조례 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지역사회 차원의 교육활동 및 사회참여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조성, 발달장애인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드는 지역사회 차원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독립된 교육시설 설치·운영 및 무상의 적절한 공적 평생교육 환경 조성의 목적임.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근거가 마련 될 것으로, 평생 교육시설 설립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 시설 확충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⑤ 이창숙 대표(발달장애인전통문화예술단 "얼쑤")

-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센터나 학습관이 없으며, 발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정책이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 성인 발달장애인 문제를 개인 또는 가족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가족의 붕괴상황까지 올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책무성을 지니고 적극적 노력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지국가 기대
- 적합한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마련으로 발달장애인 본인의 욕구나 능력, 흥미에 맞는 교육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끼면서 지역에서 인간다운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조성 필요

③ 청중토론

○ 조례안에서 권리보장과 평생교육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 대부분 지자체들이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으며, 구리시의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번 토론회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지원 방안을 위한 토론회로써 평생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짐.

[질의: 문화복지지원단체 강사 이슬비]

⇒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집행부나 의원발의를 통해 만들어 주면 시행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예산을 반영하고, 조례를 만들 때 다수의 의견을 모아 세부적으로 의회가 진행함으로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새로운 문제 중 하나가 김기룡(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의 제안대로 많은 지자체들이 법률에 따라 권리보장 지원조례로 가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평생교육과 권리보장을 개별조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좋은 제안임. 그런데 우리는 발달장애인 조례조차 없어서 이번에 조례(안)에 평생교육을 제안한 것으로 다른 지자체를 따라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짐.

조례명에 평생교육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보이며, 조례 제정 후 특별조례를 통해서라도 개별적으로 제정하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두 개의 조례로 만드는 것은 찬성.

기존의 광역지자체 수준으로 하기 보다는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토론자들의 의견반영이 잘 되었으면 함.

[답변: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

○ 지역사회발달장애인 조례 제정을 위해 문화복지위원회를 통해 조례가 만들어지기 위해 어떤 과정을 통해 입법을 힘을 써주실수 있는지?

[질의: 장애인부모회 전재호]

⇒ 전반적으로 조례를 발의할 때 많은 분들이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그대로 가져다 우리도에서 발의하기 때문에 긴 고민 없이 하기도 하지만 조례를

진행할 때 간담회도 갖고, 의견 필요시에는 토론회를 가지고 있음.

장애인 복지를 위해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예산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한 없이 부족한 것은 행정에서의 지원계획된 사업과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과 많이 차이를 느끼고 있음.

부모님들의 걱정은 아이가 학교졸업 후 어딘가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영향을 받는 환경적인 것이 필요한데도 센터만 늘린다는 것. 발달장애인 예산이 70억이 사업비 빼고 늘었으나, 다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말 필요한 영역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고, 당장 목이 마른 공간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고 있지 못함.

센터진립에 집중하기 보다 센터의 역할들은 평생주기에 따라 교육들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문제, 발달장애인들이 앞으로 어떠한 생활주기로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개인적으로 컨설팅하는 부분이 주목적일 것임.

현재 다양한 평생교육센터, 주간보호센터 등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녹여낼 것이냐, 이에 준하는 부분들을 지원해보려고 하니 조례가 없어 고민하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음.

목적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한번에 100%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모아서 발제자가 제안한 조례내용과 입법부에서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정리해야 할 사항들을 마무리해서 5월 회기에 발의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음.

진행을 하고나서 문제가 생길 경우 수정발의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꼭 만들도록 할 것임

[답변 :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연]

⇒ 평생교육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새로운 시설을 짓자는 것은 아니고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하면 될 것이고, 유휴 인프라 사용과 기존에 잘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제도라는 것이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인프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엮어내느냐인데 그동안 개별적으로 놓고 따로따로 하니 제안을 드리는 것이며 말씀하신 내용과 별개의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음

또한 개인부담으로 가다보니 공적비용이 들어갈 곳에 안들어가고 엉뚱한 곳에 가서 돈만 들어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필요한데 제대로 투자하겠금 하기 위한 제안임.

[답변 :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

결과 및 성과

<도출과제>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정보제공
3.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의 필요성 제기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발달장애인의 실태와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평생교육을 위해 평생교육시설 및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책개발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성 인식

부여군 농업발전 및 농촌 활성화 방안 모색

< '17. 3. 21.(화) /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

총 평



- 충남도 및 부여군의 농업발전과 농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로
 - 참석자 대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농업·농촌위기의 원인, 양상 및 대안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특히, 고령화, 소득양극화 및 4차 산업혁명 등 거시적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안마련과 이해관계당사자의 토론 및 합의에 기반을 둔 상향식 농정 패러다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그러나, 농업·농촌 위기대응을 위한 합리적 제도가 마련된다 하여도, 농민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위기극복 및 발전을 도모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주요 토론 내용

① 주제발표

< 김기현 지역농업네트워크 충청본부장 >

- 고령화, 글로벌 경쟁,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가치 증대, 과학기술 발전 등 농업·농촌의 거시적 환경변화를 직시하고, 지역 농업특성을 고려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부여군 농업발전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 농정 거버넌스 제안
 - 외부 환경변화와 부여농업의 특성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토론, 합의하여 정책화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 설립 필요
 - 농업생산기반 혁신을 위한 2트랙 전략 제안
 - 굿뜨래 통합마케팅시스템을 통한 전업농의 공동생산조직화
 - 영세농의 친환경농업유도

② 지정토론 (4인)

① 박지홍 과장(충청남도 친환경농산과)

- 농업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 쌀 적정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타작물 재배기반 구축, 소득중심 원예사업, 지속가능한 블루오션 산업육성방안 등 제안

② 김길환 과장(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 2040년 부여 고령화율 40% 초과로 노동력 공급문제 예상
 - 대안으로 젊은 농업인 육성 및 귀농인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토마토 산업의 경쟁력 강화, ICT 융복합 스마트팜 육성, 곤충산업에 대한 관심제고를 요함

③ 최재욱 조합장[부여군 구룡농협]

- 정부의 유통정책변화로 인한 불합리성 개선 필요
 - 정부는 농산물을 통합마케팅 조직을 경유토록 하여
 - 유통단계 증가, 수수료 증가 등의 문제
 - 마케팅 효율성제고를 위해 노력한 농업인단체가 관련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의 문제 발생함

④ 백승민 조합장(부여군 세도농협)

- 원에 산업의 규모화와 시설현대화를 통한 비용감소·생산성향상 중요
 - 이미 규모화를 이룩한 선도업체는 규모화와 시설현대화를 갖춘 후발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음
 - 선도업체의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지원방안 요망
- 원에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거버넌스에 입각한 정책결정 필요

③ 청중토론 (5인)

- 광역단위의 품목별 유통체계 확립을 통한 체계적 관리 필요함
[의견: 지역주민 1]
- ⇒ 도 및 군 단위 품목별 연합체에 관한 현황조사중이며, 상향식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답변: 박지흥 과장]
- 젊은 농업인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관련 정보의 유기적 제공 및 소통채널 마련 방안은?
[의견: 지역주민 2]

⇒ 밴드(Band) 등을 통한 품목별 정보제공 및 소통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3농혁신 정책과 관련한 정보소통창구가 있으므로 적극 활용 권유

[답변: 김길환 과장]

⇒ 부여군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하여 ICT를 활용한 정보소통창구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의견: 좌장 강용일 위원장]

○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공동공장 마련 등 6차산업 관련 지원이 요구됨

[의견: 지역주민 3]

⇒ 자연드림과 같은 협동조합형 6차산업 지원방안, 즉 공동 가공공장 및 유통체계 마련 등 구체적 방안마련이 현재 논의 중임.

[답변: 김길환 과장]

○ 농자재 지원정책의 실효성의 의심되며, 차라리 그 재원으로 벼짚 환원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방안을 고려할 필요 있음

[질의: 지역주민 4]

⇒ 불필요한 농자재의 지원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유통구조개선폰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농민들께서 벼짚을 매도하고, 벼짚을 이용한 토양개선을 위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벼짚환원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벼짚이 토양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과 분석중임

[답변: 박지흥 과장]

⇒ 쌀 가격 하락으로 벼짚이라도 매도하여 수익을 보충하려는 농민들의 절실한 마음을 고려해야 될 필요성 있음

[의견: 좌장 강용일 위원장]

- 농민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농업·농민문제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야 하며, 농업 및 행정당국도 적극적인 소통의 장을 제도적·정기적으로 마련해야 함

[의견: 지역주민 5]

- 충남 및 부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령화 및 소득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마련,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 변화가 농촌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는 방안마련 및 거버넌스에 입각한 상향식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좌장 강용일 위원장]

결과 및 성과

<도출과제>

1.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에서도 농정 거버넌스 제도화
 - 농정 각 분야에 대한 쌍방향 정보제공을 바탕으로
 - 이해관계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소통, 대화에 참여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정책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2. 농정에 대한 농민의 주인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거시적 환경변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업정책 및
- 농업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상향식 의사결정의 중요성
-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농정 거버넌스 제도화 필요성 인식



타 시 · 도 의회 주요 동향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자녀양육휴가’ 도입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문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2)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서울시 공무원에게도 자녀 학교활동 참여지원 휴가, 군 입영 자녀를 둔 직원에게 자녀 입영 휴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4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문영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과 동시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 서울시의 일·가정 양립 문화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동 개정조례안은 △ 임신공무원의 야간 및 휴일근무, 장거리 출장 제한, △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적 승인,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8일 개최예정인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저출산 문제 해결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인천광역시의회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대표 박영애 의원, 공동부대표 박병만 의원, 이영환 의원, 이용범 의원, 김정선 의원)는 지난 4월 18일 14시에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의장 김영국)를 방문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 이날 업무협약은 노총의 인적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천광역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설문조사 및 캠페인을 지원하고 바람직한 출산·육아·보육정책 등에 대한 의견과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 한노총에서는 노동자 비정규직의 정규화·근로주택활성화·근무시간 연동제 추진 등으로 노동자의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이 이루어진다면 저출산 문제해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의장 출신인 박병만 시의원은 업무협약식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동 책임을 강조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조, 정부, 사회단체 등 모두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대전광역시의회 도안친수구역 공동주택 개발방식에 대한 정책간담회 개최

- 대전광역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25일(화)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안갑천친수구역 공동주택 개발방식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 전문학 산업건설위원장이 진행한 이 간담회에서는 “공공개발이나, 민간개발이나?” 라는 논쟁의 중심에 있는 도안갑천친수구역 내 공동주택 개발방식과 관련하여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그리고 건설관련 협회대표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전 위원장은 “민간개발업자들도 이해관계에 따라 도안갑천친수구역 내 공동주택의 개발방식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민간개발이든 공공개발이든 대전시민의 삶과 대전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바람직한 결정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간담회에는 백명흠 대전도시공사 사업이사, 장일순 대전광역시 택지개발담당, 그리고 건설관련 단체로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의 각 지부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경상북도의회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일 「의정자문단」 출범

경상북도의회(의장 김웅규)는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의회의 정책개발분야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상북도의회 의정자문단」 구성을 완료하고 4월 20일 의정자문단 자문위원 28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의정자문위원들은 교수 14명, 시민사회단체 4명, 직능단체 명 3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높은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경험으로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정자문단은 향후 연 2회 정도의 자문회를 개최하여 의정자문단의 적극적인 활동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각 자문위원들은 상임위원회 및 의회차원의 회의·자문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정책연구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등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위촉식에 이어 김봉교 의회운영위원장의 주재하에 의정자문단 운영방향을 모색하는 회의를 가졌는데 경일대학교 행정학과 최근열 교수가 경북도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위해 자문 안건별, 위원회별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비롯 의정자문단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의 이창용 상임대표는 의정자문단이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역할을 선도해나가자는 제안을 하였으며,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이정호 교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정책의 중요성을, 한국 농촌지도자 경북도연합회 노인두회장은 농업현장 경험의 정책반영을, 그리고 경북미래문화재단의 권두현 상임이사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시너지효과를 낼수 있는 정책사업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도기욱 기획경제위원장도 의정자문단의 인력풀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일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자문위원들의 도의회 역할에 대한 홍보를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윈윈(win-win)의 효과를 만들어나갈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의정자문단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경상북도의회 김웅규 의장은 위촉장을 자문위원마다 직접 수여하면서 인사말씀 등을 통해 “이번 28명의 지역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정자문단은 경북도의회가 300만 도민을 위한 대표기구로서의 의정활동에 역동적이면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꼭 필요하다” 며

이를 통해 “상임위원회 중심의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경북발전과 도민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임을 강조했다.



최근 제 · 개정 법령



1.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2018.4.19.] [법률 제14837호, 2017.4.18., 제정]

□ 제정이유

세척제 유해성분 노출위험, 종이컵에 대한 환경호르몬 논란 등 위생용품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이 지속되고 위생용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회용 컵 등의 위생용품은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폐지된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으나, 「공중위생법」 폐지 후 위생용품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개정되지 않아 새로운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 부재, 사회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 미비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위생용품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현재의 관리체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3조).

다.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위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함(제8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은 판매·대여하거나 제조·수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제10조).

마.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제품명, 업체명 및 제조연월일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위생용품이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대여하거나 제조·수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제11조).

바. 위생용품제조업자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이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 검사하도록 하며, 직접 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및 제22조).

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 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32조).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93호, 2017.4.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둘째,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며, 하자보수 불이행 시 지방자치단체 장의 시정명령권을 규정하는 등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과 관련하여 입주자·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셋째,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관리주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1항 제10호마목 신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분양전환 이전까지는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토록 함(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제5호 신설).

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민법」 제667조를 준용함(제37조제2항).

라. 사업주체의 하자 불이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함(제37조제4항 신설).

마.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제38조제3항 신설).

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함(제40조제1항 및 제5항).

사.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의 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42조의2 신설).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93조의2 신설).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7.3.28.] [대통령령 제27959호, 2017.3.27., 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7년 4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3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